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연구소의 목적) 본 연구소는 CT 기반기술과 응용기술 연구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간 공동연구의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최신의 CT 기반기술과 응용기술 연구
2. 양질의 CT 전공자 배출을 통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3. 문화재 측정 기술의 연구 및 표준화
4. 문화재 진단·수리 기술의 연구
5. 문화재에 대한 고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연구
6. 문화재에 대한 고증 정보를 이용한 문화재 복원 기술 연구
7. 문화재의 영화·게임 등에서의 활용 기술 연구
8. 문화재 활용을 통한 예술품 제작에 대한 연구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자문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격 및 임명) ①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5-1-17~2 제5편 부설연구기관

③자문위원은 CT연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연구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무)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위원은 연구소장과의 협의하에 본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을 수행한다.

③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④연구원은 연구위원의 사업수행을 보조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본 연구소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조직)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은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사업의 운영방안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소집과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과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경비 및 연구비)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교비, 용역사업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보 칩

제16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칩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